##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5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송옥주 · 민병덕 · 이연희

박지원 • 한정애 • 문진석

이수진 · 이병진 · 역태영

박 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

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 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 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업"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② (생 략)	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			
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u>농업</u>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상인 자	<u>기준으로 농업</u>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		
	<u>의 100분의 65</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